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 하나 UBS 미국토탈일드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변경내용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 모투자신탁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매매·평가이익 유보 반영) 등

3. 효력발생일 : 2016년 10월 28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0월 28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 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부 칙	(신 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매매·평가이익 유보) -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제45조, 제49조, 제50조 등)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미국 토탈일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투자대상** **2. 채권** (생략)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생략) **4. 어음** (생략)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미국 토탈일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투자대상** **2. 채권** (생략, 현행과 동일)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생략, 현행과 동일) **4. 어음** (생략, 현행과 동일)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이하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다음 각 목의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
	<집합투자증권 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 -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다음 각 목의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

		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 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SICAV - US Total Yield (USD)"펀드의 운용상 중요한 변화(외국 위탁업자의 변경, 펀드 보수의 인상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변경 발효일 1 개월 전까지 국내에서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SICAV - US Total Yield (USD)"펀드의 운용상 중요한 변화(외국 위탁업자의 변경, 펀드 보수의 인상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등록 후 공시(수시공시 등)될 예정입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주3)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징구하는 보수는 연간 0.64% 수준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금액에 따른 Share Class 와 Rebate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64%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은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주4)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년도(2015.08.27~2016.08.26)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삭제>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나. 과세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016 년 10 월 28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7)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1. 재무정보**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이하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현행과 같음)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이하 현행과 같음)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

		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총보수·비용* - 피투자펀드보수 포함 <신설> ※ 주석사항 총보수비용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를 포함합니다.	**보수**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총보수·비용 - 피투자펀드보수 미포함 합성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 보수 포함) ※ 주석사항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64%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변경대비표

1. 대상펀드: 하나UBS 미국토탈일드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변경내용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매매·평가이익 유보 반영) 등

3. 효력발생(예정)일 : 2016년 10월 28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7조(투자대상 자산 등)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매(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제18조(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	제8호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제8호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6호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바. (생략)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생략)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6호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바. (생략, 현행과 동일)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 (생략, 현행과 동일)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4항제2호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제4항제2호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신설>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6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익분배)	제1항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제1항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0월 28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4항 제5항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항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	제 2 항	제 2 항

입 등의 제한)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제 6 항 제 4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자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제 7 항	제 6 항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7 항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부 칙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등)